

아청법 토론회와 관련하여

고의수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규정 경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규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00. 7. 1 제정 당시부터 시행하고 있었는데 이때에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에 대하여 규제가 실시되고 있었습니다.

이후, 2010. 8. 20경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 이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고 이러한 성범죄 발생요인 중의 하나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보고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부각되었는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 시청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충동을 일으키게 하여 잠재적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양산할 위험성이 내포되고 있음에 따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에 대하여 그 대상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를 추가하여 개정되어 2012. 3. 16부터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국회의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로 개정하여 2013. 6. 19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죄 처벌

2007년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함)에 의하면, 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 대여 또는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위와 같은 목적 없이도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단순히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록 함으로써 처벌의 범위를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청소년을 음란한 장면의 출연자로 하여 청소년을 착취하는 것을 방지하고, 청소년의 건전하고 안전한 성장을 보호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긍정적으로 평가됨에 따라, 2008. 2. 4부터 개정·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 때 참고한 자료로는 「형법」의 경우 ‘단순 소지’를 처벌하는 예로 i)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1) ii) 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폭발물을 소지하는 행위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²⁾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미국·독일 및 프랑스 등 외국의 사례에서도 아동 포르노그래피(Child Pornography) 단순소지에 대해서도 형사상 처벌을 가하고 있는 사항을 참고한 것입니다.

한편, 2012년 국회의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소지 부분에 대한 처벌의 명확성을 위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자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개정하여 2013. 6. 19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규제 필요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그 보호대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등장하여 성착취 등 피해를 입는 아동·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보고 성범죄를 일으켜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불특정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목적도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규제 필요성은 모두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봅니다.

1) 「형법」 제205조(아편등의 소지)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및 원료물질의 ‘소지’에 대해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행위유형별로 가중처벌하고 있음.

2) 제121조(전시폭발물제조등) 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폭발물을 제조, 수입, 수출, 수수 또는 소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최근의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가 아동음란물을 상습적으로 감상한 것으로도 보도된 바도 있고, 아동포르노와 아동성폭력 사이에도 상관관계가 있음이 보도된 바 있으며, 인터넷 상의 아동음란물 탐닉을 통해 성인지적 왜곡이 발생하여, 성폭력 범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큼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감상하는 데는 성적 접촉에 대한 욕망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차단하여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이 보호되도록 사회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에 대한 처벌은 구체적 위험발생뿐만 아니라 추상적 위험발생 가능성에 대하여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 사례로는 살인예비 음모 등에 대하여도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이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원인 중 하나가 된다고 보고 있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규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